

#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 검 토 보 고

전준호의원의 19명의 의원으로부터 2017. 8. 21. 제출되어 8. 25. 기획  
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모든 분야에 청년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
-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자립기반 조성
- 청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근거 등을 명문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다.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청년정책 계획, 각종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라. 청년의 고용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시행
- 마.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사. 청년정책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 설치 및 운영

###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사료됨.
- 용어의 정의에 있어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9세로 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를 15세이상 34세이하로 정하는 사항과 안산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 운영 규정의 제6조(입주자의 자격)에서 규정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는 사항을 포괄하여 광의의 정의를 함으로써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기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제7조)

- 안 제6조는 시장에게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 확대, 고용·주거안정·생활 안정과 권리보호 등을 포함한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의무와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등을 부과함.
- 안 제7조는 기본계획에 다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음.
- 이는 청년정책에 대한 우리시의 비전과 추진목표,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고, 정기

적으로 실적이 관리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각종 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계획을 통해 청년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나. 청년정책위원회 설치등(안 제9조)

- 안 제9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산시 청년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근거와 심의내용,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이는 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조정과 협력, 청년정책의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 됨.
- 특히, 20명 이내의 위원 가운데 7명 이상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장을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청년 정책에 대한 시의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시가 수립하는 각종 청년정책의 적시성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 노력(안 제12조~제18조)

- 안 제12조부터 제18조에서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및 권리보호, 생활안정, 시설지원등에 대한 시장의 지원노력과 대책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청년이 당면하고 있는 고용확대나 주거안정 문제, 생활안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량개발과 교육여건 개선,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모두 담아 청년이 처한 최근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단기적 지원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됨.

#### 라.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안 제19조~제21조)

- 청년시설의 설치와 운영, 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안 제19조의 청년시설의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탁조항을 삽입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1항에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안 제24조는 청년과 관련한 우수정책 제안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우리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상과 같은 조치들은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계단체나 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겸증되지 않은 사업의 확장이나 소수의 단체와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것임.
- 또한 청년기본조례의 제정과 운영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노년층에 대한 자립지원 등이 소외될 수 있는바, 청년을 통한 각 계층의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되는 포괄적 방안도 검토가 필요 하다고 사료됨.

#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송바우나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2017. 8. 21. 제출되어 8. 25.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

### 2.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법이 정하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범죄 피해자 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규정 함 (안 제5조)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명시 (안 제7조)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 (안 제8조)

### 3. 검토의견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 「대한민국헌법」 제30조<sup>1)</sup>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 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 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 등 안산시 차원의 시책 마련은 부족 하였다고 보임.
- \* 법 13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 때문에 시민들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안산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8조는 범죄피해자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해서는(안 제2조제1항제3호)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 한 시에 소재한 법인’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법인은 60개이나 안산시에는 1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가 안산·

1)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광명·시흥을 관할하여 활동하고 있음.

〈안산시 소재 등록법인〉

센터명	소재지	관할구역
안산·광명·시흥지역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2005.1.6. 개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71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202호	안산·광명·시흥

- 법 제3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바,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상기 법인에 지원(연간 1억원)을 해왔던바, 향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활동과 실태에 대한 실효적인 검토와 안 제7조제2항 5호에 의거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소외됨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법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8. 16. 제출되어 8. 3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1990. 6. 23. 제정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하는 것이 핵심내용임.
- 1993. 4. 10.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동 조례의 근거조항인 제2조 제2항이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을 법령에 직접 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게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동 조례 폐지

### 3.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제2조(법의 적용범위)제2항이 1993. 4. 10.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고 현재 그 적용 대상의 기준을 법령에 직접 정하고 있어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

2) ②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경영하는 다음의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에 대하여는 법을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1980·5·8, 1988·12·31>  
1. 시장사업(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을 포함한다) 2. 도축장사업 3. 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  
4. 통운(도선)사업 5. 중기관리사업 6. 관광사업 7. 계량기검정사업 8. 체육장사업 9.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을 포함한다)  
10. 공원사업 11. 기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그 경비를 주로 사업경영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9.3.23.일 안산도시공사 창립 이후 조례가 정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현재라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8. 16. 제출되어 8. 3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과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법규체계 구축.

### 2.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10조)
- 「지방공기업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조항 삭제(안 제15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제18조 삭제)
- 「지방공기업법」 제67조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27조)
- 법제처가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시장이 안산도시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안산도시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안 제32조의2 제1항 삭제)

###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사항인 제60조와 제62조 제3항, 제67조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이며,
- 법제처가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인 안산도시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

하여 안산도시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  
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8. 16. 제출되어 8. 30. 기회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지방채 상환기금 존속 기한을 재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을 2021.12.31.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개정 (안 제2조제2항)
- 기금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 관리·운용(안 제4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2001년 중앙정부의 시군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준칙안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그 동안 이 조례에 기한 기금을 조성한 적도 없고 기금에 대한 계좌를 개설한 바도 없어 제정 이후 유명무실 한 상태로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 역시 이미 경과 (2009.1.1. ~ 2013. 12.31.)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향후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를

안정적으로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존치하고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8. 16. 제출되어 8. 3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민시장 사용료 분할 납부 시 이자율 적용기준 개정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정비

###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 시민시장 사용료를 분할 납부 시 6%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안 제7조제3항)
- 시민시장 사용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2항)

###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7항 개정에 따라 종전 시민시장 사용료를 분할 납부 시 6%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안 제7조제3항)하는 사항으로 매달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이자율이 평균 1.5%대로 해당상인에게는 연3만원에서 약6천5백원 정도의 사용료를 작게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 시민시장 사용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4조제1항, 제2항) 됨에 따라 개인들이 보험에 개별적으로 들지 않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제거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8. 16. 제출되어 8. 3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운영실적 저조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 2. 주요내용

- 기존 조례 상 협의회의 존속기한(2016.6.30.)을 삭제하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을 위촉 및 위촉해제 함(안 제3조제4항)

###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연3회 미만 개최(우리시의 경우 연1회 정도 개최됨), 구성·운영 개선이 필요한 위원회등은 존속은 필요하나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방식으로 현행 본조례상 운영되는 협의회의 존속기간도 만료되었으며 협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8. 16. 제출되어 8. 3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특화거리 지정기준을 완화 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고,
- 「안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저조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 2. 주요내용

- 특화거리지정 기준인 일정지역 동일업종 개수를 40개에서 30개로 하향 조정(안 제7조제1호)
- 기존 2년으로 규정한 위원의 임기부분을,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위원을 위촉 및 위촉해제 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3조)

###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특화거리 지정 기준을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4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를 30개로 하향 조정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요건 완화는 되겠으나 집단화된 점포가 작을 경우 특화거리로써의 실효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정지역에 동일업종 뿐 아니라 유사업종의 집단화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며,

- 본 개정 조례안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이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연3회 미만 개최(우리시의 경우 연1회 정도 개최됨), 구성 · 운영 개선이 필요한 위원회 등은 존속은 필요하나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방식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8. 16. 제출되어 8. 3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운영) 현황

- 정책연구 사업
  - 안산시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 안산시 비정규직 및 임금노동자 현황 조사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교육 사업
  - 노동법률강좌 및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

- 안산노동대학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노동기본권 보호 사업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사업(안산시 노동인권지킴이)
- 생활지원 사업
- 노동자 동아리 지원
  - 비정규직노동자 가족 야유회

현 수탁기관	안산·시흥 비정규노동센터(이사장 조여옥)
위탁기간	2015. 1. 1. ~ 2017. 12. 31.(3년)
직원현황	4명(센터장 1, 정책팀장 1, 기획팀장 1, 노무사 1)

## 나. 위탁내용

- 시설명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고잔동) 상하수도사업소 4층
- 위탁기간 : 9년(2018. 1. 1. ~ 2026. 12. 31.)
  - ※ 재위탁 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 시설규모 : 면적66.3m<sup>2</sup>
- 위탁사무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 운영인력 및 예산 : 4명 344,784천 원(시비 315백만원, 자부담 29백만원)
  - ※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다. 민간위탁 심의의 필요성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 및 책임성 있는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 필요

##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안산스마트허브의 배후도시로 성장한 안산시에 상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 위탁기간이 2017.12.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단체)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특징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279,136명)중 41.3%(11만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안산시의 적극적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 및 책임성 있는 민간전문기관(단체)등에 위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기관(업체)이 선정 되어야 할 것임.

#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홍순목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2017. 8. 21. 제출되어 8. 25. 기획 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 1. 제안이유

- 안산시민의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사랑을 고취하고 국기 선양에 대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기 게양일을 지정 운영하여 국기게양 문화의 정착을 도모코자함.

### 2. 주요내용

- 시장의 국기 선양활동에 대한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여 운영 (안 제3조)
- 국기 선양계획을 수립과 국기사랑 활성화 노력을 정함(안 제4조)
- 다중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과 지원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5조)

### 3. 검토의견

- 동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게양일을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에 의거하였으며, 국기의 존엄성을 확산하기 위한 국기선양에 대한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제5조(다중 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제1항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 정의(건축법 시행령 3)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을 말한다) 삽입

과 제2항의 계양대 설치비의 일부 예산지원에 대한 범위는 규모에 따라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3)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2) 종교시설3) 판매시설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8. 16. 제출되어 8. 3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 1.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산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2조)
- 적용제외,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안 제3조부터 제5조)
- 정보의 공표, 정보공개 방법, 비용의 부담 (안 제6조부터 제8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 운영 및 심의회 구성(안 제9조부터 제10조)
- 회의, 의견청취, 위원의 책무, 위원의 위촉해제, 수당 등 (안 제11조부터 제15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안 제16조)

###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당초 1994.9.12.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지난 2005.4.1. 폐지하고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칙」으로만 운영하여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3년 개정시행 됨에 따라 2014. 4. 22.(제210회 임시회)에 「안산시 정보공개 조례제정안」으로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으며,

- 그 동안 규칙으로만 시행되어오던 행정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작용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절차가 민주적·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립한 제정안의 재상정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개대상기관에 안산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추가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보공개의 방법을 제시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정보공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확대하고 시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료의 적극적인 해석과 공개 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8. 16. 제출되어 8. 3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
- 북한이탈주민 지원 범위(안 제5조)
-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업무의 위탁 및 포상(안 제7조 및 제8조)

## **3. 검토의견**

- 본조례는 1997.1.13.자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138개 지자체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으로 현재 우리시에도 540명의(경기도6번째로 많음) 북한 이탈주민 거주자가 생활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그들에게도 시민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 지난해(‘16년) 본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제정을 제의(박은경의원)하고 시 관련부서와의 검토 결과 시에서는 자체 규칙으로 제정(2017.7.25.)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협의가 되었던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 중앙정부(통일부)의 법률(‘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제49조(권한의 위임))에 규정된 북한이탈 지역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는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로 시·군 지방자치 단체는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위 시행령에 따른 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을 안산시 규칙으로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는 바
- 본조례 제정에는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명기하지 않았으며, 기 제정된 규칙과의 연계성과 중복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8. 16. 제출되어 8. 3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 운동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선진형 공공스포츠 클럽을 육성하기 위해 2017. 7월 안산시체육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추진한 「가칭)안산시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공모 참여시 제시한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함.

### 2. 위탁내용

- 대상사업 : 가칭)안산시스포츠클럽 추진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 위탁기간 : 준공일로부터 ~ 3년
- 수탁기관 : 안산시체육회(비영리단체)  
※ 수탁기관 선정근거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대한체육회 지역스포츠 클럽 공모요건
- 위탁시설 : 호수생활체육관 및 운동장, 원곡생활체육관 및 운동장

시 설 명	호수생활체육관, 운동장	원곡생활체육관, 운동장
위 치	단원구 적금로 9 호수운동장내	단원구 원곡동 946-1 근로자운동장내
규 모	체육관 750m <sup>2</sup> , 지상 2층, 주차장, 운동장(6,131m <sup>2</sup> ) 등	체육관 651.68m <sup>2</sup> , 지상 2층, 주차장, 운동장(3,811m <sup>2</sup> ) 등
주요시설	체육관(배드민턴, 농구, 배구), 운동장	체육관(배드민턴 3면 및 배구겸용), 운동장
시 설 비	1,370백만원(특교 500, 특 조 400, 시비 470)	1,150백만원(국비 500, 시비 650)
사업기간	2015. 12. ~ 2017. 10.	2015. 02. ~ 2017. 09.

- 소요예산 : 71,136천원(민간위탁금)

(단위:원)

구 분	인 건 비	운 영 비	비 고
합 계	1억2천만원(4명)	<b>71,135,889</b>	인건비 1억 2천만원자체부담
호수생활체육관	6천만원(2명)	36,885,275	
원곡생활체육관	6천만원(2명)	34,250,614	

※ 2016년 안산시 산규체육시설 「운영위탁 타당성용역 결과보고기준 ,체육진흥과-2130(2016.06.14)」

○ 시설운영방법 : 스포츠클럽(사단법인) 설립 운영

- 운영종목 : 배드민턴, 야구, 배구, 탁구, 펜싱, 리듬체조, 농구 등 7개

○ 위탁업무 범위

호수·원곡체육관(운동장) 및 부대시설, 운동물품, 비품, 사무용품 등의 관리운영

- 사용료, 기타 수입금의 징수

- 기타 “위탁자” 가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업무

- 이 외에 “위탁자” 와 “수탁자” 가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 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

###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7.7월 안산시가 안산시체육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주관: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가칭)안산시 스포츠클럽」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동안은 안산도시공사가 체육시설을 위탁 받아 진행하여온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금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안산시체육회가 스포츠클럽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호수·원곡체육관 (운동장)의 준공시 3년 동안 7개 종목(배드민턴, 야구, 배구, 탁구, 펜싱, 리듬 체조, 농구)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먼저 종목선정에 있어 다양한 연령·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목을 선정하여 운영해야할 것이며, 그동안 안산도시공사가 시설관리를 해오던 방식에서 공공스포츠 클럽이 운영과 관리를 할 경우 종목에 대한 운영

에 효율성은 높일 수는 있겠으나 관리적인 면에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시범사업이 선진형 생활체육문화로 정착해 나가 위해서는 당초 안산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과의 세밀한 장단점 비교를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진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8. 16. 제출되어 8. 3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안은

- 2007년부터 일동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었던 「일동복지타운 건립 사업」이 사업부지 내 암(岩)의 과다분포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대비 가용면적 부족 등을 사유로 전면 폐지됨에 따라,
- 2014년부터 대체시설 조성을 원하는 주민들의 청원이 접수되어 수차례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인근 공원부지에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숙원해소 및 건전한 생활체육과 문화 공간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임

## 2. 주요내용

### ○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 ○ 사업개요

-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일동 707번지 일원(성호공원 내)
- 사 업 기 간 : 2017. 01. ~ 2019. 03.
- 면 적 : 연면적 3,031㎡(부지면적 9,900㎡)
- 사 업 비 : 7,780백만원(국비 2,334 시비 5,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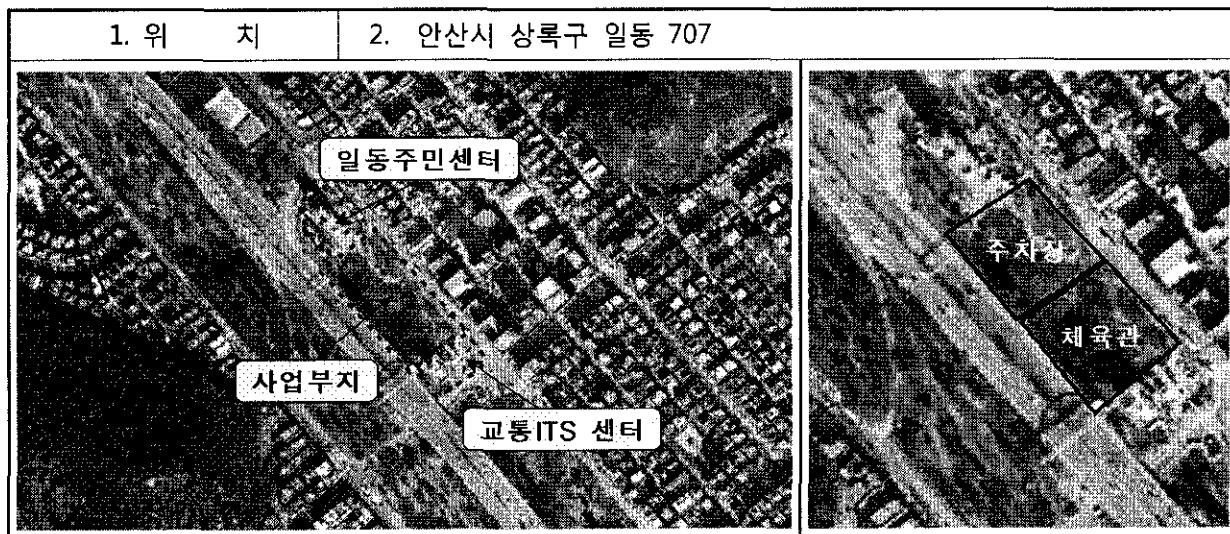
#### ○ 사업내용

- 다목적 체육관, 샤워장, 탈의실, 다목적실, 관리실, 주차장(99면) 등

## ○ 사업비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계	7,780	0	300	7,480		
국 비	2,334	0	0	2,334	0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5,446	0	300	5,146	0	2회추경
기 타	0	0	0	0	0	

## ○ 위치도



## ○ 추진사항 및 향후일정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반영 : 2017. 2.
- 2018년도 지특회계 보조금 신청 : 2017. 2.
- 경기도 투융자심사 완료 : 2017. 6.
- 공유재산취득심의 : 2017. 7.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17. 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7. 10. ~ 2018. 3.
- 공사착공 : 2018. 3.

· 공사준공 : 2019. 3.

### 3. 검토의견

- 일동체육문화센터는 당초 2007년 일동지역 주민청원에 의해 추진 하여온 ④ 「일동 복지타운 건립사업」이 2014년까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부지내 암(岩) 과다 분포로 인해 발파공사의 불가피와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대비 가용면적 부족,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대체시설 확보 지난 등으로 본부지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4년부터 대체시설 조성을 원하는 주민들의 청원이 접수되어 수차례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상록구 일동 707번지 일원(성호공원 내)에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소 및 건전한 생활체육과 문화 공간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위치:상록구 일동 산24-19일원, 면적:71,681m<sup>2</sup>, 사업비:208.5억원(공사비:179.5, 보상비등29), 시설규모:고등학교,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주차장,도로등

#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8. 16. 제출되어 8. 3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법률상 근거가 없는 환수 관련 규정 삭제(안 제9조)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조례로 이를 창설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규정 삭제(법제처: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권고)

## **3.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복구비에 대한 부정수혜시 지급금에 대한 환수를 법률상으로 명시하여야 하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환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본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환수방법을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8. 16. 제출되어 8. 3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의 위탁기간(2015. 1. 1. ~ 2017.12.31.)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 위탁기간 : 2018. 01. 01. ~ 2027. 12. 31.(10년)  
※ 협약체결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3년(2018. 1. 1.~2020. 12. 31.)으로 함.
- 위탁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시설현황
  - 위 치 : 단원구 꽃우물길 97(화정동)
  - 규 모 : 건물 4개동  $735.23\text{m}^2$ , 대지  $4,785\text{m}^2$
  - 인 력 : 21명(원어민강사 7, 내국인강사 4, 생활교사 2, 행정 8)

#### 나. 위탁사무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의 종합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 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유지 및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화정영어마을의 관리·운영 및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민간위탁 심의의 필요성

- 외국어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강의식 교육형태의 프로그램이 아닌 실용형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로 원어민과 함께 영어권 문화 및 생활체험 등을 통하여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전문 기관(단체)에 위탁 필요

###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이 2017.12.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단체)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 우리시의 경우 관내 초등학교 원어민강사 지원 제도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미 지원으로 2013년부터는 영어마을 정규과정에 참가하여 학과과정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54개 초등학교 중 32개 교가 참가하고 있으며,
- 현재 3개 과정 13개 프로그램으로 연간 11,663명(2016년 기준)참여하고 있는 체험형 외국어 교육의 장으로써 민간전문기관(단체)에 위탁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가 선정 되어야 할 것임.

# 안산시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8. 16. 제출되어 8. 3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안산시평생학습관 위탁기간(2015.1.1.~2017.12.31.)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안산시평생학습관
- 위탁기간 : 2018. 01. 01. ~ 2027. 12. 31.(10년)  
※ 협약체결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3년(2018. 1. 1.~2020. 12. 31.)으로 함.
- 위탁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최초 위탁 2012. 7. 1.
- 시설현황
  -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1(사동)
  - 규 모 : 5,454m<sup>2</sup>(지하1층, 지상5층/4개동)

#### 나. 위탁사무 : 안산시평생학습관 시설관리 및 운영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
-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동아리 지원
-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 민간위탁 심의의 필요성

-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차별성과 특색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추진 필요

###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안산시 평생학습관의 위탁기간이 2017.12.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단체)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평생학습관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차별성과 특색을 확보하여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여러 프로그램이 기존 주민센터 및 각기관과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의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운영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함.